

보건교육의 실시

건강생활 실천,
질병예방 등에 관한 교육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자료 : 보건복지부>

1. 관련조항

- 법 : 제12조 제3항
- 시행령 : 제16조 내지 제18조
- 시행규칙 : 제8조 제3항

2. 규제사항

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업장 등

- 1)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 다음의 기관중 임직원 300인 이상의 기관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 정부출연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 3)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 4)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 및 의료보험연합회

나. 보건교육의 내용

- 1) 금연·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 2)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다. 보건교육의 방법 및 기준

실시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담당자
1. 사업장·정부 투자기관·정 부출연기관 및 공익법인	전 직원	매년 2시 간 이상	1.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면허 를 받은 자이거나 식품학·영 양학·보건학·보건교육학· 체육학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학과를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10일 이상의 기 간을 정하여 직 무교육을 이수 중인 자	2시간 이 상	
2. 의료기관 (종합병원)	환자 및 그 보호자	매월 1회 이상	2.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1급 생 활체육지도자(체육활동에 한하 여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 다)
3. 보험자 및 보험자단체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수 시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 리자 4. 보건교육실시기관의 장(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건강 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건교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교육하는 경 우에 한한다)

- 3)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 5)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6) 건강증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7) 기타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산
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보건교육 포
함)

라. 행정사항

- 1) 행정조치
- 사업장에서의 보건교육은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교육을 하거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보건
관계 교육시 만성퇴행성질환예방 및 금
연·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교육
을 포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종합병원에 대해서 진료대기실 등 환자
나 보호자가 대기하는 장소에서 비디오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도
록 조치

2) 벌칙: 50만원이하의 과태료 ㉔